

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 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당초 개정령안	수정 개정령안
<p>제25조(제한입찰의 제한기준)</p> <p>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,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(제한입찰의 제한기준)</p> <p>③ ----- 공</p> <p>사 등의 현장,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·납품지 등이 있는 시·도와 접해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시·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제25조(제한입찰의 제한기준)</p> <p>③ ----- 공</p> <p>사 등의 현장,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·납품지 등이 있는 시·도와 접해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시·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.</p>

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
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
시·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
고,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
영업소가 그 시·도의 관할구역 안
에 있어야 한다.

그
시·도(인접 시·도까지 지역제한의
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
·도까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
서 같다)

1. 공사의 현장이 2개 이상의 시·
도에 걸쳐 있는 경우
2. 다른 시·도의 관할구역 안에
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
지·보수 및 관리하거나 다른
시·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
의 납품지가 있는 경우
3.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
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
인 경우